

‘농약 잔류허용기준’이 강화됩니다.

-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수입 및 국내 유통식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성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(PLS)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.
- 잔류허용기준이 강화(PLS 시행)되면 작목별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절대 사용이 금지됩니다.

- ▶ 작목별 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: 허용기준 이하 검출 시 적합
- ▶ 작목별 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: 일률기준 0.01ppm 이하 적합



- 2019년 1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.
- ▶ 1차는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2016년 12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.

대분류	소분류	작 목 명
견과 종실류	땅콩 또는 견과류	밤, 호두, 은행, 잣, 땅콩, 아몬드, 피칸, 개암, 도토리 등
	유지 종실류	참깨, 들깨, 해바라기씨, 호박씨, 올리브, 먼실, 유채씨, 홍화씨 등
	음료 및 감미종실류	커피원두, 카카오원두, 콜라너트, 과라나
과일류	열대과일류	키위(참다래), 바나나, 파인애플, 아보카도, 파파야, 대추야자, 망고, 구아바, 코코넛, 리치, 패션푸르트, 두리안, 망고스틴 등

꼭! 지켜야 할 핵심 사항 5가지

- 재배작목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기
-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 지키기
- 수확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하기
-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하기
- 불법 밀수입 농약이나 출처 불분명한 농약 사용금지